

# **인천광역시장·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**인천광역시의회**

# 인천광역시장·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(신현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.  
발의자 : 신현환 의원  
(찬성자 7인)

## 1. 주 문

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·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불임과 같이 요구함.

## 2. 제안이유

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및 제43조(의회규칙)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(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)
-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(시장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

<붙임>

## 인천광역시장·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·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### ■ 출석요구 개요

#### ○ 출석일자

- 인천광역시 : 2013. 12. 17 (화) ~ 12. 18 (수) < 2일간 >
  - 인천광역시교육청 : 2013. 12. 19 (목) < 1일간 >
- ※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출석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을 따름.

#### ○ 출석장소 :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

#### ○ 요구이유 :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

#### ○ 출석대상자 :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에서 정한 공무원

- 인천광역시장 및 공무원
-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공무원

### ■ 교차출석 요구

#### ○ 교차출석대상

- 인천광역시 : 기획관리실장, 안전행정국장
- 인천광역시교육청 : 교육정책국장, 행정관리국장

#### ○ 일시

구분	교차 출석 일시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교육청	비고
4차, 5차 본회의	2013.12.17(화)~12.18(수) 10:00 인천광역시 질문	(시장 등 관계공무원)	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	
6차 본회의	2013.12.19(목) 10:00 인천광역시교육청 질문	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	(교육감 등 관계공무원)	

#### ○ 대리출석 : 불참사유발생시 시장·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대리출석

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	<p>□ 지방자치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</li><li>○ 제43조 (의회규칙)</li></ul> <p>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제22조 (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)</li></ul>
관계 법령	<p>□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제73조 (시장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</li></ul> <p>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</p>
관련조례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43조(의회규칙)**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22조(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)**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 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
  2. 교육감
  3. 부시장, 부교육감
  4.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본부·국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
  5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.
 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
  7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(교육장)
  8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
  9.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
  10.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
- ② 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

## □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**제73조(시장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**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·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늦어도 1일 전까지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### 〈참 고〉

**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한 출석요구는 의회의 필요**  
(시정에 관한 질문, 안건심사 관련 타 위원회 출석요구 등)에 의하여 관계  
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이며,

**단체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심사(또는 심의)를 위한**  
소관 위원회(또는 본회의) 출석은 안건제출(또는 의견제시)자로서의 출석  
의무 이행이므로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관계공무원 등은 당연(자진)  
출석하여 제안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, 의견 제시 등을 하여야 함.